#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85

발의연월일: 2025. 1. 14.

발 의 자:최수진·조정훈·박준태

김장겸 • 조지연 • 임이자

이상회 · 박충권 · 구자근

성일종 의원(10인)

### 제안이유

현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은 오래된 법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기초연구 투자 확대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적 정비가 시급함.

국가 차원의 기초연구 진흥 견인과 글로벌 수준의 기초연구 역량 확보를 위해 기초연구 분야 지원을 체계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강 화할 필요가 있음.

기초·원천연구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총칙, 계획수립 및 기술 개발 등을 기준으로 별도의 장(章)을 구성하여 독립법으로서 지위를 강화하고, 법 구조를 체계화하려 함.

또한, 정부·연구자의 책무, 다양한 시책 수립 등을 위한 근거를 명시화하여 기초연구 관련 다양한 가치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원천·융합 연구 정의에 대해 목적·특성을 중심으로 정의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2조).
- 나. 정부의 기초·원천 연구의 기본원칙을 고려한 시책 마련, 연구자의 윤리적 연구수행 및 성과 확산 노력 등 정부와 연구자의 책무를 신설함(안 제3조 및 제4조).
- 다. 효율적인 기초연구진흥 정책 수립 등을 위해 기초연구 분야 연구 성과, 연구인력 등 관련 통계 작성 및 지표 조사에 관한 규정을 신 설함(안 제9조).
- 라. 기초·원천연구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토록 신설함(안 제28조).
- 마. 오랜 기간 기초연구 수행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기초연구 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최고과학자 지정·지원 근거 신설함 (안 제20조).

법률 제 호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혁신의 바탕이 되는 기초연구를 지원·육성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창조적 연구역량의 축적을 도모하며,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경 쟁력의 강화와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기초연구"란 자연현상에 대한 탐구나 관찰할 수 있는 사실들의 발견 자체를 목적으로 새로운 지식이나 이론을 획득하기 위해 행하는 연구활동을 말한다.
  - 2. "원천연구"란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독창

- 적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활동으로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활동을 말한다.
- 3. "융합연구"란 단일 분야 과학기술로 해결할 수 없는 복합문제 해 법을 제시하는 범 학제형 협력연구활동을 말한다.
- 4. "대학"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및 기관을 말한다.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의 학교
  - 나.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 다.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 라.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마. 「대구경북과학기술워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5.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出捐金) 또는 보조금을 받는 연구기관(이하 "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중 기초연구 분야의 연구기관
  -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 다. 연구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 업부설연구소
  - 라. 기초연구 분야의 대학 부설연구기관
  - 마. 국공립연구기관
  - 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사.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제3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초 연구 진흥, 원천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적극적인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제1항의 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연구자의 자율성 및 창의성 존중
  - 2. 기초 · 원천연구 분야의 다양성 확대
  - 3. 국가 경제성장과 산업 발전. 공공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
  - 4. 독창적 기술로 다양한 분야에 응용・연계
  - 5. 기초 · 워천연구 분야에 대한 안정적 투자 지속
  - 6.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기초연구에 대한 사회적 신뢰 증진
  - 7. 젊은 연구자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8. 장기간 기초 · 원천연구 분야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 조성
  - 9. 국내외 협업 연구 장려 및 활성화
- 제4조(연구자의 책무) ① 연구자는 기초·원천연구의 진흥을 위하여 기초·원천연구 전 과정을 성실하게 윤리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연구자는 기초·원천연구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후속연구자를 존중하고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연구자는 기초・원천연구 수행을 통하여 국가과학기술경쟁력의 강화와 경제사회의 발전에 기초연구의 성과가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 등

- 제6조(종합계획 등의 수립과 시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이에 따른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기초연구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목표와 방향
  - 2. 기초연구의 기반구축 및 환경조성과 그 밖의 지원제도
  - 3. 기초연구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의 양성과 활용방안
  - 4. 기초연구의 진흥에 관한 투자계획과 재원 확보방안
  - 5. 장기간 같은 분야의 기초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지원방안
  - 6. 기초연구 분야 연구자의 역량 강화 및 성장 지원방안

- 7. 그 밖에 기초연구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한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에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기초연구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기초연구진흥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초연구진흥시행계획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과 기초연구진흥시행계획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기초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초연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 연구기관 및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진흥기금"이라 한다)의 운용수익금과 제16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제2항에 따라 기초연구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기초연구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제22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협약을 맺어 그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연구하게 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의 추진, 제2항에 따른 위탁 등 기초연구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지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 진흥에 관한 각종 계획 및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 하기 위하여 기초연구 분야의 연구동향, 연구성과, 연구성과의 활용 및 연구인력의 활동 등 관련 통계를 작성하고 지표를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작성 및 지표의 조사·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의 장,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

을 준용하며, 관련 지표의 조사·분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기초연구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등

- 제10조(기초연구 인력양성 및 확충) 정부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 필요 한 연구인력의 확보를 통한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환경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1. 대학교수, 연구원 등 관계 전문가의 연수 및 연구비 지원
  - 2.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의 연구장학금 지원
  - 3. 대학부설연구소 및 우수연구집단 형성 지원
  - 4. 연구교수(연구조교를 포함한다)제도, 객원교수제도 및 객원연구원 제도, 교수 및 연구원의 연구휴가제도의 활용
- 제11조(기초연구를 위한 시설·장비 확충) 정부는 대학 및 연구기관이 기초연구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연구시설·공동연구시설, 기 자재 및 장비 등을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방 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2조(대형 연구인프라 활용 기반 조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은 기초연구, 원천연구 및 기술개발 등에 사용되는 대형연구시설・ 장비 등 인프라(이하 "대형 연구인프라"라고 한다)가 연구성과를 창 출 및 확산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

- 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형 연구인프라의 활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활용체계 구축, 공동활용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형 연구인프라의 구축·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형 연구인프라 확보 및 활용관련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인력 및 관련 연구기관의 국제교류와 산학연 국제 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대학 및 연구기관 소속 연구소의 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은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소가 분야별 기초연구의 전 문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대학부설연구소 및 우수연구집단 형성 지원
  - 2.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인력교류, 연구시설·장비 공동 활용 등 산업계, 학계 및 연구소 간의 교류 추진
  - 3. 기업 등 민간의 대학 및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 촉진
- 4. 그 밖에 기초연구환경 조성 및 기초연구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제14조(기초연구 성과 확산) ① 정부는 기초연구 성과가 다양한 분야

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기초연구 성과에 기반한 기술의 실용화 및 기술 창업 등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기초연구 분야가 필요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대학·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가 구축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 성과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15조(민간의 기초연구 투자 장려 시책) ① 정부는 민간에서 기초연 구에 대한 투자를 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민간이 기초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기부 또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6조(공공기관에 대한 기초연구 투자 권장) ①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비의 일부 를 그 기관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과 관련된 기초연구에 투 자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권장 대상 공공기관 및 투자규모는 매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과학기 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제17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정부는 미래 유망 과학분야의 기초연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 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8조(학술단체활동지원) 정부는 기초연구의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회 등 학술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9조(국제공동연구지원) 정부는 기초연구의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이나 국제기구 등과의 기초연구에 관한 공동사업, 우수한연구자·연구기관의 국제공동연구 협력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20조(기초연구 최고과학자의 지정·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장기간 기초연구를 통해 성과가 탁월한 과학자를 기초연구 최고과학자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초연구 최고 과학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각종 지원을 할수 있다.
  - ③ 기초연구 최고과학자의 지정요건과 지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장 기술개발 지원

- 제21조(주요 기술 및 연구개발 정책의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은 소관 기술개발,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전략적 투자 등을 위해 소관 주요 기술, 연구개발 분야별 종합적인 계획·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주요 기술, 연구개발 분야별 종합적인 계획·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종합적인계획·시책을 수립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② 분야별 계획 ·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기술, 연구개발의 발전목표 및 기본방향
  - 2. 핵심 기술 확보 계획 및 전략
  - 3. 기술.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환경조성과 그 밖의 지원제도
  - 4. 핵심 기술 확보,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계획과 재원 확보방안
  - 5. 전문인력의 양성과 활용방안
  - 6. 관련 연구성과의 확산 및 기술이전 계획
  - 7. 그 밖에 기술, 연구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22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 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 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 1. 대학 및 연구기관
- 2.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3.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 4.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5.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 6.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 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7.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 8.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9. 그 밖에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

- 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연구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2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자체연구와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연구와 운영 등을 위한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원천연구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천연구와 관련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연구 및 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천연구 육성과 관련하여 기술혁신 과 신산업 창출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국내외 환경 변화에 맞게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5조(도전적 연구개발사업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도전 적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지원하고, 도전적 연구개발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② 도전적 연구개발 지원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 1. 도전적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기획, 평가, 관리 등의 추진·관리 계획
  - 2. 도전적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제도의 마련

- 3. 도전적 연구개발 관련 투자의 확대
- 4. 그 밖에 도전적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26조(융합연구의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제, 기술간 융합기술을 육성하여야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7조(융합연구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은 융합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융합연 구개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추 진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융합연구개발의 발전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 2. 융합연구개발의 발전을 위한 정책의 추진계획
  - 3. 융합연구개발 관련 제도의 마련
  - 4. 융합연구개발 관련 투자의 확대
  - 5. 융합연구개발 혁신 역량의 강화
  - 6. 도전적 융합연구개발 촉진
  - 7. 융합연구개발 연구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
  - 8. 융합연구개발에 관한 국제협력 지원
  - 9. 융합연구개발에 관한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융합연구개발의 발전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제5장 전담기관 지정 등

- 제28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진흥 및 기술개발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제8조제2항에 따른 위탁 업무
  - 2. 제12조에 따른 대형 연구인프라 활용 기반 조성 관련 업무
  - 3. 제17조에 따른 시범사업 관련 업무
  - 4. 제20조에 따른 기초연구 최고과학자 지정 관련 업무
  - 5. 제26조, 제27조에 따른 융합연구 관련 지원 업무
  -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초연구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위탁하는 업무
  - ③ 정부는 전담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

-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2.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 3. 전담기관의 업무실적 등이 현저히 부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전담기관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⑤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운영,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제22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에 따라 기초연구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체연구(이하 "연구사업"이라 한다)의 연구개발결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는 자에게 기술료를 징수 및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제22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기술 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 1. 연구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등에 대한 보상
  -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납부

- 3.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 ④ 제22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한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는 진흥기금에 산입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제3항제1호에 따른 보상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참여제한 등) 기초연구사업 등에 대한 참여제한과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를 준용한다.
- 제31조(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설립 등) ① 기초연구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우수한 과학기술인을 발굴·활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석학(碩學)의 교류와 활용 기구로서 한국과학기술한림 원(이하"한림원"이라 한다)을 둔다.
  - ② 한림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한림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기초연구진흥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조사 · 연구 및 정책자문
  - 2. 외국 과학기술한림원과의 교류협력사업
  - 3. 과학기술인의 명예를 기리고 보전(保全)하는 사업
  - 4. 우수인재의 이공계 진학 촉진을 위한 정책자문
  - 5. 과학기술 대중화를 위한 정책자문

-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사업
- ④ 정부는 한림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⑤ 한림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⑥ 한림원이 아닌 자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한 사항 외에 한림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감독명령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33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31조제6항을 위반한 자
  - 2. 제32조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초연구사업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한 기초연구사업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 제3조(기초연구사업 연구과제의 협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초연구사업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기초연구사업의 연구과제에 관하여 맺은 협약은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맺은 협약으로 본다.
- 제4조(특정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한 특정연구개 발사업에 대한 계획, 선정한 연구과제, 연구과제에 관하여 맺은 협약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한 특정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계획, 선정한 연구과제, 연구과제에 관한 맺은 협약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2항에 따라 연구 비용에 충당한 출연금, 연구개발비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충당한 것으로 본다.
- 제5조(한림원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한림원으로 본다.